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8
----------	------

2020년 0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20년 05월 25일  
다. 회부일 : 2020년 05월 29일  
라. 상정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 가. 제안이유

-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위탁기간 만료로 폐지된 사업을 삭제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수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함(안 제1조).

- 2) 서울디지털재단의 수행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가) 정책연구 범위를 디지털 기술 외에 스마트도시 분야까지 확대함.
  - 나)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빅데이터 관련 사업 규정을 정비함.
  - 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를 마련함.
  - 라)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항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20. 3. 19. ~ 4. 8.)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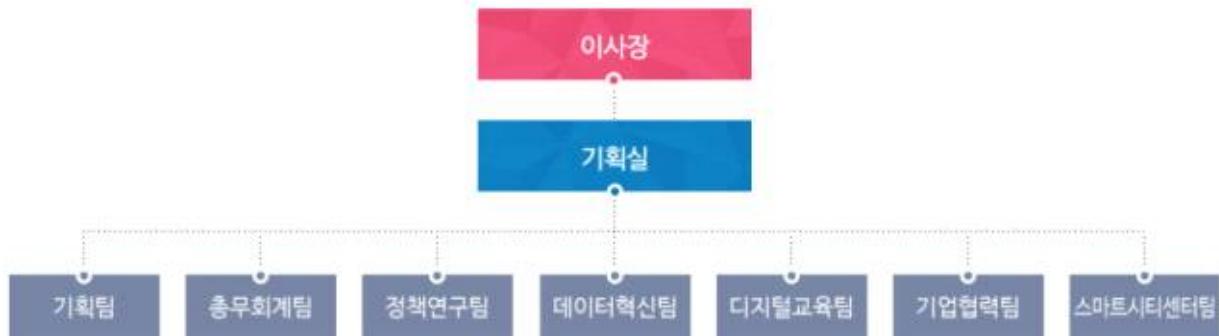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디지털재단(이하 ‘디지털재단’이라 함)의 설립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하고, 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위탁기간 만료로 폐지된 사업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을 삭제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수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년 6월에 설립되어 2019년 1월 소관부서가 경제 진흥본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해 8월 에스플렉스센터 1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현재는 이사회(정원 10명, 이사장 1명, 이사 7명 (당연직 포함), 감사 2명(당연직 포함))와 1실 7팀으로 조직을 개편(2020.1.)하였으며, 2020년 디지털재단 출연금은 93억 2천만원(전년대비 9.4% 증액)으로, 스마트 시티 정책연구,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서울디지털재단의 연혁 〉

---

- 2014. 8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추진계획 수립
  - 2016. 1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
  - 2016. 1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 2016. 5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 법인 설립 허가
  - 2016. 5 법인설립 등기
  - 2016. 6 재단 업무 개시(기업팀, 사업팀, 지원팀)
  - 2016. 9 재단 사무소 이전(중구→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2017. 1 직제 개편(정책연구팀 신설)
  - 2017. 4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개소
  - 2018. 1 직제 개편(1실 1본부 4팀)
  - 2019. 1 서울시 소관부서 변경(경제진흥본부→스마트도시정책관)
  - 2019. 4 직제 개편(1실 5팀)
  - 2019. 5 2대 이사장 취임
  - 2020. 1 직제 개편(1실 7팀)
-

## 〈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직 〉



## 〈 서울디지털재단의 인력 〉

('20.5.20.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상근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45	1	1	1	3	8	16	13	2
현 원	40	-	1	-	3	7	15	12	2
과부족	△5	△1	-	△1	-	△1	△1	△1	-

## 〈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증액분	증액비율
출 연 금	6,776,765	10,395,180	8,519,600	9,320,029	800,429	9.4%
인 건 비	1,073,553	1,507,115	1,969,481	2,415,915	446,434	22.7%
운 영 경 비	529,012	361,561	1,304,554	1,261,696	△42,858	△3.3%
사 업 비	5,155,200	8,045,504	4,902,641	5,295,818	393,177	8.0%
예 비 비	19,000	481,000	342,924	346,600	3,676	1.1%

## 〈 2019·2020년 서울디지털재단 사업 〉

2019년 사업			2020년 사업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지능화 디지털화를 통한 사회혁신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사업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공공·민간·시민 협력 플랫폼	(신규)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스마트시민랩 운영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사업		디지털 국제협력
	스마트시민랩 운영		(신규)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디지털혁신학교 운영(종료)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종료)		
스마트도시 서울 위상강화	디지털 국제협력	공공·민간·시민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도시데이터 교육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수탁) 경제정책실 소관(위탁계약 6.14 만료)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구)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종료)		
	ICT·로봇벤처리빙랩 구축(종료)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

## 가.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안 제1조는 디지털재단 설립·운영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 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지털재단은 당초 경제진흥본부 소속기관으로 “서울시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할 독립적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으나<sup>1)</sup> 1) 소관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 12., 4면 참조.

부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역할조정을 위해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를 위한 빅데이터 등 인프라 기반 구축을 담당하고, 디지털재단은 시민의 디지털 인프라·데이터 활용 지원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음.

## 4차 혁명시대,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간 역할분담 방향 보고

※ 김호평 의원님 요구사항(289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간 업무분담 보고 요청

IV

### 비전 및 전략

####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고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도약

-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인프라(통신망·데이터) 조성
- ② 스마트도시 핵심기술의 시장 전반 활용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
- ③ 시민·기업과 함께 서울형 스마트도시 가치창조

기관	추진전략	핵심과제
스마트도시정책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sup>1)</sup>) 구축</li><li>②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센서망(S-Dot<sup>2)</sup>) 구축</li><li>③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WiFi 확대</li></ul>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li><li>② 민관 협력 빅데이터 개발 활성화</li><li>③ 빅데이터 시민 개방 및 활용 확산</li></ul>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li><li>②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li><li>③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li></ul>
디지털재단	스마트도시 혁신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li><li>② 시민·기업 참여 스마트도시 혁신 서비스 개발</li><li>③ 스마트도시 스타트업 지원 (스마트시티센터 운영)</li></ul>
	스마트도시 R&D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스마트도시 정책연구</li><li>②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li><li>③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li></ul>

1) S-Net : Smart Seoul Network

2) S-Dot : Smart Seoul Data of Things

- 이에 따라 디지털재단의 설립·운영 목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법령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함.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12, 47면 참조).

- 다만, 디지털재단은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털재단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목적 기관인지, 사업목적 기관인지, 위탁사업 수행 기관인지 등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받은바 있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디지털재단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목적 기관인지, 사업목적 기관인지, 위탁사업 수행 기관인지 등 역할이 불분명함. 디지털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p> <p>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재단의 정체성을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설립</li> <li>○ 재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마트시티 싱크탱크로 발전하도록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 추진계획 마련 ('19.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성과지표 개발, 서울시 지능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 및 활용모델 연구 등</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재단 핵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19.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및 R&amp;D과제 발굴·연구수행</li> <li>- 지역별 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li> <li>- 기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개발</li> <li>-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강화 (스마트시티즌 랩 등)</li> <li>- 스마트시티 글로벌 위상강화(스마트서울 영문 사이트 개설 등)</li> </ul> </li> </ul>

○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재단업무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업무 중복이 있으며, 직접수행 사업이 많지 않고 3분의2이상이 외부 용역임. <u>씽크탱크로서의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함.</u> (서울디지털재단)</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 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시민·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연구, 시민·공공의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li> <li>- 스마트도시 기업 기술개발 및 성장 지원(CES 해외진출 등)</li> </ul> </li> <li>○ 연구·컨설팅 분야의 직접 수행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연구 : (기존)서울대 위탁 → (변경)재단 직접 수행</li> <li>- 자치구 컨설팅 : (기존)외부 용역 → (변경)재단 직접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등 일부 영역에 한정해 용역 의뢰</li> </ul> </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업무공유·역할 조정 지속 추진</li> <li>○ 디지털재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컨설팅·R&am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5G기반 시민서비스 지원 등</li> <li>• 시민·민간·공공의 디지털역량 강화 및 협력 촉진</li> <li>• 시민 데이터수집단 운영, 빅데이터 교육강화 등</li> </ul> </li> </ul> </li> </ul>

- 따라서 디지털재단은 설립목적 개정취지에 맞게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방향성 및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화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정체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사업수행 규정 정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위탁기간 만료로 폐지된 사업을 삭제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수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li> <li>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li> <li>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li> <li>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li> <li>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li> <li>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li> <li>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li> <li>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제4조(재단의 사업)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li> <li>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li> <li>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li> <li>디지털 격차해소 사업</li> <li>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li> <li>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 협력</li> <li>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li> <li>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 〈 최근 3년간 개정안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사업명 〉

개정안 제4조 사업	해당부서	사업명(연도)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018년]정책연구팀 [2019년]정책연구1팀 정책연구2팀 [2020년]정책연구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2018~2020) ※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연구 서울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지원사업(2018),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2019, 2020),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2019)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2018년]디지털사업팀 [2019년]기업지원팀 [2020년]기업협력팀 스마트시티센터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2019, 2020), 소상공인지원 협동로봇 개발(2019, 2020),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2019),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2020)
3.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2018년]디지털교육팀 [2019년]시민협력팀 [2020년]디지털교육팀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2018, 2019), 스마트 서울 앱공모전(2019), 스마트 시민랩 운영(2018~2020) ※ 연도별 사업명 : (2018년) 디지털 시민랩 구축·운영 (2019년) 스마트 시티즌랩 구축·운영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2018년]디지털교육팀 [2019년]시민협력팀 기업지원팀 [2020년]디지털교육팀 기업협력팀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2018, 2019), ※ 해당사업 중 <어디나 지원단> 운영 격차해소 로봇개발 시범사업(2019),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2020)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사업	[2018년]디지털사업팀 [2019년]시민협력팀 [2020년]디지털교육팀 데이터혁신팀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2018),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2019), ※ 해당사업 중 <도시데이터 교육> 운영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2020),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2020), 도시데이터 교육(2020)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도시 분야 국제협력	[2018년]디지털사업팀 [2019년]기업지원팀 [2020년]기업협력팀	디지털 국제협력(2018, 2019, 2020)
7. 서울특별시장이 위탁 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사업	[2018년]경영기획팀 디지털사업팀 디지털교육팀 [2019년]경영기획팀 시민협력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2018, 2019)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 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8년]디지털사업팀 [2019년]기업지원팀	ICT·로봇벤처리빙랩구축사업(2019)

- 현행 제4조제3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사업은 위탁계약이 만료(19.6.14.) 됨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고, 현행 제4조제4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은 안 제4조제7호로 옮겨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1호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소관부서가 2019년 1월 경제진흥본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까지 확대가 필요한 정책환경 변화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함(「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I

## 정책환경

- 세계 관심이 스마트도시로 집중, 기술 선점을 위해 각국 경쟁 중
  - 스마트도시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
    - 연평균 18.4% 성장, '23년 692조원 규모 전망(Markets and Markets, '19)
  - 세계 각국 도시에서 상황과 여건에 맞춰 다양한 스마트도시 전략 추진 중
- 정부는 스마트도시를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정비, 정책방향 발표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운영 ('17.11월)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발표 ('18.1월)
  - 5개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19~'23년) ※ 스마트도시법 근거, '19.7월 발표
    - 맞춤형 모델조성 :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모델 조성, 지자체 공모사업 확대
    - 학산 기반 구축 : 도시안전 체계를 위한 통합플랫폼 보급, 데이터·AI 기반 실증 및 인재육성
    - 혁신 생태계 조성 : 규제개선, 기업·시민 참여 거버넌스 운영, 스마트도시 인증제
    - 글로벌 협력 진출 : 민관 해외진출 지원, 국제기구 협력강화, 월드 스마트도시 엑스포 출범
- 많은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두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중
  -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전체, 기초 61개)가 전담 조직(과·팀) 확보 중
    - ※ 지자체 전담조직 주이 : '18년 10개 → '19. 6월 78개
  - 국가 공모 사업 등 스마트도시 정부지원 사업 활발
    -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스마트도시 챌린지(인천, 대전, 광주, 창원) 등

- 다만, 2018년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서울기술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2)</sup> 서울기술연구원의 ‘스마트도시연구실(선임연구원 1명 등 11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 디지털재단의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분야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무조정 등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기술연구원 〉

#### 설립시기

- '18. 3.27.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법인 설립
- '18.12.12. : 서울기술연구원 개원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1.4.)

#### 기관소개

- 복잡·다양한 서울형 도시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각종 기술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시 출연기관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2본부 7실 3센터

- 
-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3.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7.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9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최근 3년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 관련 조사 및 연구 실적 〉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간	추진현황	비 고
1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18.11.7~ '19.12.31	종료	고유과제
2	Digital 기반 도시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 연구	'18.11.1~ '19.12.31	종료	고유과제
3	서울형 혁신융합 미래도시 기획 연구	'18.11.1~ '19.12.31	종료	고유과제
4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보행량 추정 기법 연구	'19.3.1~ '20.3.31	종료	고유과제
5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 시스템 현황 및 적용 방안 연구	'19.6.1~ '19.12.31	종료	고유과제
6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19.3.1~ '19.12.31	종료	고유과제
7	CCTV에 나타난 범죄 상황 인지 기술 개발	'19.3.1~ '20.3.31	종료	고유과제
8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 방안 연구	'19.3.1~ '19.9.30	종료	SeTTA 연구과제
9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19.6.11~ '20.6.10	진행중	시수탁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간	추진현황	비 고
10	서울 대도시권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 방안	'20.2.1~'20.12.31	진행중	고유과제
11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한강교량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적용방안	'20.4.1~'20.3.31	진행중	고유과제
12	미래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안	'20.4.1~'20.10.31	진행중	고유과제
13	서울시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ISP) 구축 방안 연구	'20.3.30~'20.9.25	진행중	시수탁과제
14	비만 유발요인 추정을 위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모델 개발	'20.5.11~'20.12.31	진행중	고유과제
15	노후 기반시설의 스마트 도시 계획 적용 방안	'20.7.1~'20.12.31	착수예정	고유과제

-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서울디지털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비중은 적고, 대부분은 용역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수행에 있어서 직접 수행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디지털재단은 내년 사업 수행에서 용역을 통해서 <u>용역 관리자로서의 기능만 하는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단독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u>이며, 서울디지털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디지털재단)</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 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컨설팅 분야의 직접 사업 비중 상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까지 서울대에 위탁하였던 데이터 연구를(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재단의 연구인력을 통한 직접 연구로 전환</li> <li>- 용역 관리 기능 중심으로 수행했던 자치구 대상 컨설팅 사업을 재단의 연구인력을 통한 기획·컨설팅 방식으로 전환</li> </ul> </li>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컨설팅·R&am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5G기반 시민서비스 지원 등</li> <li>· 시민·민간·공공의 디지털역량 강화 및 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데이터수집단 운영, 빅데이터 교육강화 등</li> </ul> </li> </ul> </li> </ul> </li> </ul> </ul>

※ 서울디지털재단,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26면.

### 〈 2019년 디지털재단 사업 현황 〉

(단위:천원)

연 번	사업명	추진방법	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실적
1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직접수행	서울디지털재단	530,000	188,139
		용 역	한국로봇융합연구회, 한국 챌럽		
2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직접수행	서울디지털재단	200,000	63,042
		용 역	베리타노스		
3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직접수행	서울디지털재단	1,143,371	197,867
		용 역	용역사 선정중		
4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직접수행  공 모	서울디지털재단	600,000	129,908
			이거해방, 서비스컴퍼니, 클릭트		
			해피엔굿, 대시컴퍼니, 지바이크		
			티티엔지, 에프알티, 코봇랩		
5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공 모	토룩 한국철도공사	300,000	130,754
6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 사업	공 모	한화정밀기계	176,000	96,650
7	스마트시티즌랩 운영	직접수행	서울디지털재단	460,000	231,774
		용 역	디자인스튜디오에이		
8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용 역	매직에코, 흥미랩	360,000	155,082
9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	용 역	위드시스템, 매직에코	115,000	40,706
10	디지털 국제협력	용 역	제이넷컴, 더웹컴	650,000	78,772
11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용 역	용역사 선정중	460,000	22,180
12	(수탁)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19.6월 종료)	직접수행	서울디지털재단	1,480,000	426,214
		용 역	밸에스엠		
13	(수탁)ICT·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공 사	공사시행사 선정중	970,170	14,872

\* 13. ICT·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은 국비 사업임(국비:940,900천원 재단출연금: 29,270천원)

○ 안 제4조제2호는 현행 제4조제6호의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으로 대상을 IT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보다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이면 대기업 등 모든 기업이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스타트 업(start-up)”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임.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 다만,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가 IT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은 너무 한정적이므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재단의 사업) 1. 생략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제4조(재단의 사업) 1. 생략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 기업 지원

- 안 제4조제3호(“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의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초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울시 및 시민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제4호(“디지털 격차해소 사업”)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사회문제(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2018년보다 1.0% 상승하였고(이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의 70%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이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로 계층별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나타남.<sup>3)</sup>
    - 다만, 디지털재단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的 추진방향을 보면, 장·노년층 맞춤 디지털 교육을 통한 수준 향상 및 경력 탐색 기회 제공과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로봇의 보급·운영을 통한 장·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강화라고 하고 있으나,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교육, 고령인 정보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국에서 2020년 6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디지털 문해 학습장’ 사업의 내용과도 중복성이 있는바, 사업내용에 있어서 디지털재단만의 특색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디지털재단, 「2020 주요업무 보고」, 2020.4., 18면.

## **9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추진방향

- 장·노년층 맞춤 디지털 교육을 통한 수준 향상 및 경력 탐색 기회 제공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12., 38-47면 참조.

○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로봇의 보급/운영을 통한 장·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강화 교육

- 장·노년층으로 구성된 디지털 교육 봉사단 육성(100명)
-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장·노년층 대상으로 방문 교육 추진(1,000명)

○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로봇 보급·운영

- 수요 자치구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 ※ 컨소시엄 구성('20년 2월) : 재단, 로봇기업, 교육전문 기업, 자치구
- 국비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추진(3억→10억, '20.4.7 공모선정)
- 로봇 개발, 보급 및 컨텐츠 개발(시범운영 10기, 정식운영 200기)
- 로봇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과정 운영

※ 평생교육국 보도자료 2020.5.12.자., 3-4면.

□ 첫째, 스마트기기, 무인기기 등 생활방식의 디지털화에 적응하고, 대도시 서울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에 집중한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이끈다는 목표다.

○ ‘디지털 문해학습장’ 신규 운영 통한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 서울자유시민대학, 거점 네트워크 기관 등 4곳에 무인기기(키오스크)를 활용한 ‘시민 체험형 디지털 문해 학습장’을 신설·운영한다. 6월(예정)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해 하반기 중 모두 운영에 들어간다. 디지털 문해 학습장에는 키오스크 체험기기가 설치돼 은행 ATM 사용, 패스트푸드점 무인주문 등을 시민 누구나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교육강사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키오스크 교육현장 – 서초구 스마트 시니어 IT체험관 ]



▶ 키오스크 메뉴 : 패스트푸드·카페 음료 주문, 영화티켓 발권, 고속버스 티켓 발권 등

- 안 제4조제5호(“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 또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빅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관리는 빅데이터담당관, 활용은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빅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표 2-1】 빅데이터의 정의	
기관	정의
McKinsey(2011)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수질·거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집합
IDC(2011)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고속 캡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Gartner(2012)	더 나은 의사결정, 시사점 발굴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초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자산
교육과학기술부 외(2012)	데이터 양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빠르며, 새로운 관리 및 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정보통신기술협회(2015)	새로운 가치 추출을 위해 기존의 기술 또는 기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특징(규모, 산속성, 기변성, 다양성, 진정성)을 갖는 데이터 모음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2015)의 연구를 재구성

※ 서울연구원,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2018.12, 9면 재인용.

- 안 제4조제8호(“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각종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도한 위탁사업 수행으로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 할 우려는 없는지, 위탁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 특히, 공공기관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받아서 수행할 사무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순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여기에 제시한 순화 용어를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 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그대로 쓸 수 있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66면, 224면 참조).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순화 용어
3772	타, 타~	他	다른 것, 다른~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재단의 사업) 1. · 7. 생략 8. 정부, <u>타 지방자치단체</u> ,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1. · 7. 생략 8. 정부, <u>다른 지방자치단체</u> ,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기업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우려에 따라 이를 정비함.

### 나. 주요내용

-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함.  
(안 제4조제2호)
- 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 수행은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내용은 삭제함.(안 제4조제8호)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68
	관련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3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기업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우려에 따라 이를 정비함.

## 2. 주요내용

-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함.  
(안 제4조제2호)
- 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 수행은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내용은 삭제함.(안 제4조제8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기업 지원”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으로 하며,

안 제4조제8호 중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을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5. 생략</p> <p>6.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p> <p>7. 생략</p> <p>8.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u>기업 지원</u></p> <p>3.· 7. 생략</p> <p>8. <u>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u></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u>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u></p> <p>3.· 7. 생략</p> <p>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
1.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현 행	개 정 안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